

『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따라 방재단장 선출 방법 및 방재단 소집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9조)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단원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11조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신설 등 별지 서식 정비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큰 도

- 본 『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「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」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